

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(DC)

서류확인 및 접수확인자	담당	책임자

전 산 인 자 란

1. 기업정보

20 년 월 일

기업명	퇴직연금 계좌번호
예약지급일*	수수료 연동출금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 (사전에 약정된 경우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동의(기업별도 입금)

* 상품 매도기간을 감안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급여신청시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성(대기)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예약지급일에 지급합니다.

2. 이전내용

이전사유		이전구분	
<input type="checkbox"/>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	<input type="checkbox"/> 제도전환	<input type="checkbox"/> 일부이전(현물이전은 3번 항목에서 개별 신청)	
<input type="checkbox"/> 계열사이전(과거입사일 인정)	<input type="checkbox"/> 합병/영업양수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부이전*	현물이전**
	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(보유상품 '해지 없이' 이전)
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(보유상품 '해지 후' 이전)
이전받는 금융기관	운용관리기관	자산관리기관	금융기관
			계좌번호
			예금주

* 전부이전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계좌가 해지되며, 해지시점 산출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.

** 현물이전은 당행 간 퇴직연금 이전 시 신청 가능합니다. 전부이전 시 현물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자 모두 현물이전 처리되며, 현물이전 유의사항 확인에 자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3. 이전 가입자(이전구분이 일부이전 또는 현물이전 신청인 경우 필수 기재)

가입자 성명	서명 또는 (인)	생년월일(주민번호)	제도전환/전출일자	현물이전	현물이전 유의사항확인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	서명 또는 (인)			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	설명 듣고 확인함

[현물이전 유의사항]

- 현물이전 거래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.
- 현물이전 신청 시 가입자가 운용 중인 보유상품 해지 없이 그대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.
- 정기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현물이전 후 만기 유지 시 약정이자가 지급됩니다.
- 현물이전 받는 금액은 현물이전 하는 상품의 평가액이며, 이전 후 상품을 해지(급여지급, 계약해지 등)하는 경우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아 이전 받은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.
-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수수료를 제외하고 현물이전 처리됩니다.

4. 이전 받는 기업 확인(이전사유가 계열사 이전, 합병/양수도인 경우 기재)

이전하는 기업명	와	이전받는 기업명	는 본 신청서의 내용과 같이 퇴직연금 적립금 이전을 합의합니다.
이전받는 기업 :			(법인인감)

※이전 받는 기업의 법인인감증명서 장구

본 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퇴직연금 계약이전을 청구하며, 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기재된 신청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			
기업명 :	서명 또는 (인)	신탁관리인 :	서명 또는 (인)

※ 인감은 퇴직연금 거래신고 인감 날인, 신탁관리인은 전부이전인 경우에만 작성



[유의사항]

1. 은행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지급 처리 지연시 지연보상금 지급 안내
 - 1) 은행의 퇴직연금 계약서(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계약)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금전으로 지연보상금을 지급합니다.
 - ▶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기업형IRP : 근로자 또는 가입자
 - 2) 지연보상금은 급여지급 신청일(신청서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)을 포함하여 3영업일*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, 급여지급 신청금액에 대해 지연기간에 따른 이율**을 적용하여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. 단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되었을 경우 정상처리 시 지급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차액을 더하여 보상합니다.
 - * 적립금 매각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(단, 운용관리기관과 자산관리기관이 다른 경우 5영업일)
 - ** 지연기간이 14일 이내 연 10%, 지연기간이 14일 초과 : 연 20%
2. 전부이전인 경우 퇴직연금 계좌가 해지되며, 개인부담금이 있는 경우 수수료를 제외하고 지급됩니다.
3. 원리금보장상품 만기도래 전 계약이전 거래시 약정이율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,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[제출서류]

전부이전시	일부이전시	기업IRP이전시
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퇴직연금 계약이전 동의서 (당행간 이전시 제외) 4. 이전 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 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 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포함) 또는 포 괄양수도계약서(합병/영업양수도의 경우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(변경) 규약 및 수리통보서 사본 (당행간 이전시 계좌 있는 경우 제외) 3. 이전 받을 금융기관이 계약이전 요청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 4. 전출입공문(계열사이전인 경우) 5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말소포함) 또는 포 괄양수도계약서(분할/영업양수도의 경우)	1. 퇴직연금 계약이전 신청서 2. 이전 받을 금융기관의 계약이전 요청 공문 및 입금요청계좌 통장사본

